

# 투 자 일 임 계 약 서

앱솔루트자산운용|주  
ABSOLUTE ASSET MANAGEMENT CO., LTD.

# 투자일임계약서

\_\_\_\_\_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애플루트 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자금(이하 "투자일임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범위)

고객은 투자일임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에게 일임 및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진다.

1. 투자일임자산의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대상의 가치판단에 대한 사항
4.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대상의 종류, 종목, 수량, 가격에 대한 사항
5.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대상의 매매의 구분,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사항
6. 기타 제1호 내지 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7. 그 밖의 투자일임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 제 3 조 (투자대상)

회사가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으로 한다.

1. 유가증권시장 상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각 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4. 그 밖의 고객과 사전 합의된 금융투자상품

## 제 4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투자
2.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제공
3.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4. 기타 투자일임자산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제 5 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

- ①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첨의 계약조건상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이며, 증액 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 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징수 하고, 감액 시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고객에게 환급한다.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한 기준수익률 초과분에 대하여 고객과의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 ② 수수료 납입 시기
  1. 기본수수료 : 본 계약 체결일 당일
  2. 성과수수료 지급조건 충족 시 계약만기 또는 감액 및 해지 시 납부의무일 3영업일 이내
- ③ 기본수수료가 있는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감액 시에는 본 계약에서 정한 기본수수료 선취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성과수수료만 있는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성과수수료 외 별도의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 ④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회사 이외의 제 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내지 않은 수수료에 대한 다시 요구 할 수 있으며, 고객은 3영업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 입금하여야 한다.

## 제 6 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시 계약 금액은 각종 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갱신된 것으로 하되, 별도의 고객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 제 7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일임 자산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및 처분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운용 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성과보고서 제출 시 투자정보확인서 서식을 함께 보내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 8 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성과보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단,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운용성과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운용성과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손익 및 매매회전율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격,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수수료, 각종 세금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6.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제 9 조 (투자운용인력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운용인력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담당자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의 정보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운용인력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운용인력이 법령이나 사규 등의 위반 또는 사망,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운용인력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고객이 제6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⑧ 고객이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운용인력 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 10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있다.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고객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 된 경우,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철회된 것이며, 모든 투자일임수수료는 면제된다.

### 제 11 조 (업무의 위탁)

-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 단, 투자일임자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자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자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 제 12 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한다. 단, 고객의 사전요청에 의하여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으로 할 수 있다.

### 제 13 조 (계약자산의 평가)

제12조의 현금 외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시는 해지결산일, 계약만료 시는 만료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단, 고객과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산정 등)에 의한 평가방법
2. 그 밖의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 제 14 조 (계약자산의 운용책임 및 손익의 귀속)

회사에 대한 투자일임은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일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 제 15 조 (변경시의 통지)

- ① 고객은 거래증권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별첨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통지 한다. 단,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6 조 (회사의 금지행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 제 17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제 18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 운용계좌에 대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제 19 조 (자산의 소유권)

-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거나 자문을 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를 위임 받을 수 있다.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2. 공개매수에 대한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행사
  6. 교환사채권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제 20 조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고객의 운용지시로 인한 손실
3. 모든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도용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회사 이외의 제3자(제11조에 의하여 회사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별첨>

세부 계약 내용(기본형)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
계약금액	금 _____ 원정 (₩ _____ )
기본수수료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의 연 %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과 별도로 납부)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 연 % 대비 초과수익의 %
투자일임담당자	
거래증권사	증권 _____ 지점 _____
거래계좌번호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주소	
이메일	
연락처	
편입금지종목 등 그 밖의 사항	

※ 수수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791-085251-18-968 앱솔루트 자산운용 주식회사